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전인증품 즉시구매제도 도입〉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29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전인증품 즉시구매제도 도입 및 시험평가 전문기관 지정	3
2. 사전인증품에 대한 선행연구 생략 및 별도의 사업추진방법 신설.....	13
※ 참고자료: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절차	18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2인
- 2) 발의연월일 : 2026. 6. 30.
-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험평가 및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험평가, 전력화)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중 일부 과정을 제외하거나 병합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써, 그 단축효과 및 선정대상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전쟁 사례에서 확인된 수명주기가 짧고 전장에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한 사업관리 절차를 일부 제외하는 형태로는 기술주기 및 발전속도, 소모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획득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고자 함. [제17조(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각 항 개정 및 제19조의 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및 각 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전인증품 즉시구매제도 도입 및 시험평가 전문기관 지정

□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완료된 제품을 사전인증품 목록으로 유지하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또한 사전인증품 즉시구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조하여 사전인증 시험평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즉시구매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구매)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

현행	개정안
	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소요결정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전 시험평가 등이 완료된 사전인증품 목록을 유지하며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즉시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조 후 사전인증 시험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드론·로봇 등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전시 또는 작전상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현행 소요기획(분석·실험·선행연구·소요검증)→소요결정→구매시험평가→구매 순서의 순차적 획득방식¹⁾과 달리, 소요결정 이전에 민간업체 등이 개발

1) 2026년 7월 1일부터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병행하도록 제도가 개편 소요결정 과정에서 실시하도록 소요기획절차가 개

한 제품의 성능 등을 미리 평가하여 사전인증품으로 관리한 후 실제 군 소요가 결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인증품 즉시구매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위와 같은 무기체계에 대하여 개정안은 ‘소요결정 후 시험평가’라는 기존 획득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시험평가·인증 후 소요발생 시 신속구매’라는 새로운 획득방식을 마련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방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특히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군 소요결정 이전부터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진입을 촉진하고, 군이 필요한 시점에 검증된 제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²⁾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은 소요결정 이전에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 제21조에서도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성능 등을 검증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시험평가’를 별도로

편되었음. 소요결정의 완전성을 높이고 무기체계의 전력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른 현행 방위력개선사업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사업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요제기 → 선행연구 등 소요기획 → 소요결정 →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 사업타당성조사·예산반영 → 연구개발 또는 구매 → 시험평가 → 양산·배치 → 전력화의 절차로 추진됨.

2)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방위사업청도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사전인증품의 경우 선행연구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음.

규정하고 있음.³⁾

□ 그런데 개정안의 사전인증을 위한 시험평가는 아직 군의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업체가 신청한 제품을 평가하는 절차인 반면, 현행 제21조의 구매시험평가는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시험평가라는 점에서 실시 시기와 목적 및 법적 효과가 서로 다름.

따라서 양자를 모두 ‘시험평가’라고 규정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평가가 제21조의 시험평가에 해당하는지, 별개의 평가인지 불명확해질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시험평가와의 개념적 혼선을 방지하고 양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시험평가’를 ‘실증평가’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⁴⁾

3) 연구개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되고,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제21조(시험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 2023. 5. 16.>

1. 개발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2. 운용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④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 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4) 국방부·방위사업청도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사전인증 단계의 ‘시험평가’를 ‘실증평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소요결정 이전에 사전인증을 완료한 후 소요가 결정되면 즉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에는 사전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결과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구매시험평가를 대체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개정안대로라면 사전인증을 완료한 제품도 소요결정 후 다시 제21조제4항의 구매시험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 경우 사전인증품 즉시구매제도를 도입하는 실익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음.

참고로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 시험 결과로 구매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음.⁵⁾

이와 같이 개정안에서도 “사전인증품의 실증평가 결과로 제21조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⁶⁾

다만, 사전인증 후 실제 소요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이 제품의 형상·성능·핵심부품·소프트웨어 또는 공급망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과거의 실증평가 결과만으로 구매시험평가를

5) 「방위사업법」 제21조(시험평가) 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6) 국방부도 같은 취지의 의견임.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인증의 유효기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재평가 및 인증 취소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주기가 짧은’ 또는 ‘대량 소모형’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량 소모형’을 단순한 물량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 ‘전시 또는 작전상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로 한정⁷⁾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주기와 예상 소모량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선정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은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7) 같은 취지에서 국방부는 이를 ‘기술주기가 짧고 전시 또는 작전상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인증품은 향후 소요결정 시 별도의 장기간 평가 없이 즉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업체가 제안한 제품의 성능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무기체계를 실제로 군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성능 외에도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능력, 핵심부품의 공급망, 사이버·군사보안, 상호운용성, 후속군수지원 가능성 등이 중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법률에서는 사전인증의 핵심 평가항목을 ‘성능, 공급망, 보안 등 군사적 요구사항’으로 규정하고,⁸⁾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다섯째, 개정안 제19조의2제3항은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인증품 제도는 업체 등의 신청 → 시험(실증)평가 → 인증 → 인증목록 관리 → 소요결정 → 시험평가 대체 → 즉시구매로 이어지는 새로운 획득체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단순히 ‘즉시구매절차 등’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임범위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인증기준과 인증의 취소·유효기간 등은 업체가 사전인증품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8) 국방부도 업체가 제안한 성능뿐만 아니라 공급망·보안 등 군사적 요구사항을 인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

따라서 인증심사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의 유효기간·재평가·취소, 인증목록의 유지·관리, 실증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사전인증품 즉시구매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즉시구매절차뿐만 아니라 인증심사의 기준과 인증목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상의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① ‘시험평가’를 ‘실증평가’로 수정하고, ② 실증평가 결과로 제21조제4항의 구매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적용대상을 ‘기술주기가 짧고 전시 또는 작전상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로 명확히 하고, ④ 성능 외에 공급망·보안 등 군사적 요구사항을 평가하도록 하며, ⑤ 인증심사의 기준·절차·유효기간·재평가·취소 및 인증목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시험평가 대체 등 근거 마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9조의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소요결정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전 시험평가 등이 완료된 사전인증품 목록을 유지하며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방위사업청장은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즉시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조 후 사전인증 시험평가	제19조의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술주기가 짧고 전시 또는 작전상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 공급망, 보안 등 군사적 요구사항에 대한 실증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이 부여된 품목(이하 “사전인증품”이라 한다)의 목록을 유지·관리하여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전인증품의 실증평가 결과로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증평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③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사전인증품의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의 유효기간·재평가 및 취소, 인증목록의 유지·관리, 사전인증품의 즉시구매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우 및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인증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구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

□ 현행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10)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 9) 현행 「방위사업법」 제17조제4항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제19조에 따른 ‘구매’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고 있음.
- 10) 「방위사업법」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과정에서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는 선행연구(先行研究)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쳐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17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¹¹⁾을 거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생략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사전인증품 즉시구매제도는 현행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¹²⁾에서 선행연구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최근 개정된 선행연구와 소요결정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종전에는 소요가 결정된 이후 선행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현재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소요결정 및 사업추진방법 결정에 연계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음.¹³⁾

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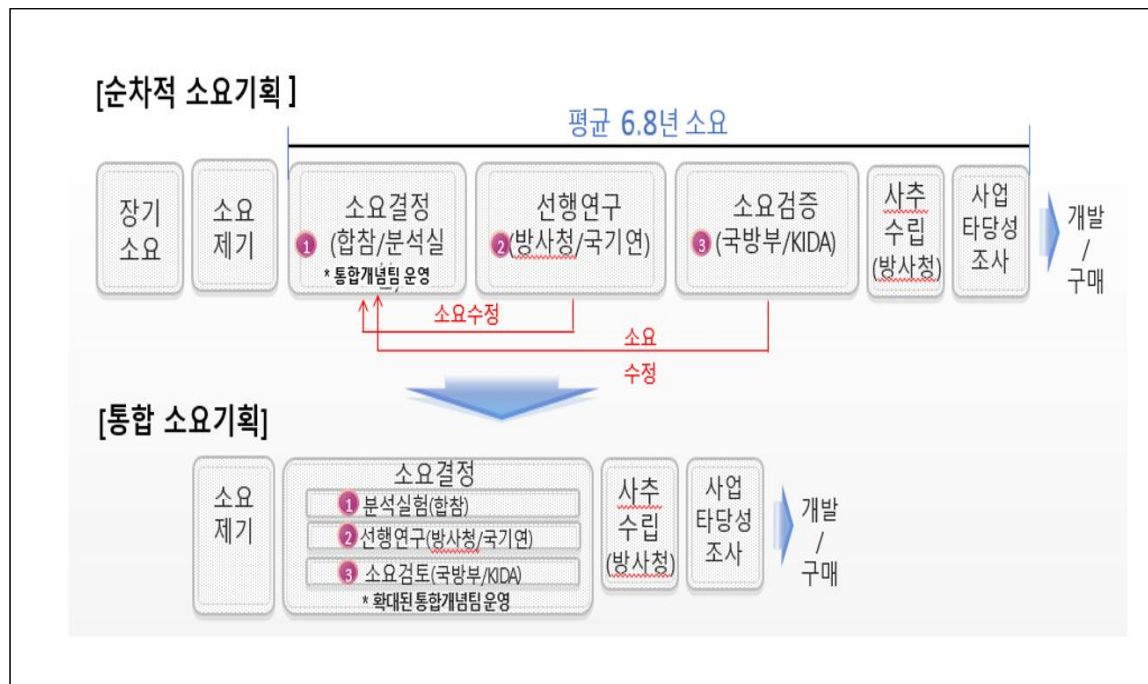
11) 시범사업은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민간의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등을 군에서 시범운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 군사적 활용성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소요 또는 일반소요로 결정하여 후속 획득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 참고자료: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절차 첨부(18페이지)

13) 「방위사업법」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과정에서**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는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소요기획 절차 개정(2026.7) 전후 비교]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개정안 발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선행연구 자체가 소요결정 이전 단계로 앞당겨졌으므로, 단순히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보다는 현행 소요기획체계와의 관계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선행연구는 단순히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 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절차임.

따라서 사전인증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모두 검토하지 않으면서 선행연구를 일률적으로 생략할 경우에는 제품의 성능은 검증되었으나 해당 제품의 획득이 비용·산업·기술적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사전인증품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원칙적으로 전부 생략하도록 하기보다는, 사전인증 과정에서 실시한 평가와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되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 등 사전인증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항은 간소화하여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12

※참고자료: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절차



*자료: 방위사업청